제32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2차 문화복지위원회

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9. .

복지환경위원회

전 문 위 원

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본 안건은 2026년 8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「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제21조에 따라 2026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

가. 재계약 7개소

연번	어린이집명	위탁체	소재지	규모(㎡)	정원(명)	위탁기간
1	도촌	권O영	비룡로 1276	175	38	2027. 1. 1. ~ 2031. 12. 31.
2	오남복지	홍O경	오남읍 진건오남로 806-28	244.8	46	2027. 1. 1. ~ 2031. 12. 31.
3	토리	유O숙	별내4로7	185.22	38	2027. 1. 1. ~ 2031. 12. 31.
4	더샵	황O주	진접읍 부평로48번길 140,	299.2	60	2027. 1. 3. ~ 2032. 1. 2.
5	다산 푸르지오	김O정	다산중앙로82번안길 74	392.7	80	2027. 1. 10. ~ 2032. 1. 9.
6	푸른들보듬이 나눔이	김O정	오남읍 진건오남로 550번길 41	593.39	80	2027. 1. 18. ~ 2032. 1. 17.
7	별꽃	안O정	순화궁로 18	286.56	53	2027. 1. 20. ~ 2032. 1. 19.

나. 신규위탁 1개소

연번	어린이집명	신규위탁 사유	소재지	규모 (㎡)	정원 (명)	위탁기간	비고
1	(가칭) 다산지금 A-3BL 어린이집	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	다산동 6111	247.71	49 (예정)	개원일로부터 5년 (2027.7. 개원 예상)	`26. 3차(예정) 수탁자심의 위원회

※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공동주택

사 업 명	사업시행자	연면적 (㎡)	세대수	동수	사용검사 예정월	비고
다산지금 A-3BL 통합공공임대주택	경기도시 주택공사 (GH)	64,008.79	518	3	2027.4. 예정	

다. 재위탁 4개소

연번	어린이집명	현 위탁체	소재지	규모 (㎡)	정원 (명)	위탁기간	비고
1	푸른숲	강O희	송산로 307번길 22	237.06	55	2027. 1. 20. ~ 2032. 1. 19.	`26. 3차(예정) 수탁자심의 위원회
2	한별	박O경	별내4로 7	381.89	79	2027. 1. 1. ~ 2031. 12. 31.	
3	퇴계원	최O춘	퇴계원면 경춘북로 558번길 10-2	313.195	73	2027. 1. 10. ~ 2032. 1. 9.	
4	별내 아이파크	이O설	덕송1로 30	253.87	59	2027. 1. 20. ~ 2032. 1. 19.	

○수탁기관 선정방식

○ **(재계약)** 현 위탁체 운영실적 평가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

사전평가 (공신력, 운영실적, 전문성, 재정능력) ⇨ **만족도 설문조사** (부모·교사) ⇨ **회계서류 등 지도·점검** ⇨ **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** (서류심사 및 제안발표) ⇨ **의회동의** ⇨ **위·수탁 계약 체결**

※ 최종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,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경쟁 추진

○ **(신규위탁/재위탁)**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체 선정

의회동의	⇨	공개 모집	⇨	1차 서류 심사 (공신력, 운영실적, 전문성, 재정능력)	⇨	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 (어린이집 운영계획, 운영실적, 전문성)	⇨	위·수탁 계약 체결

※ 최종결과 70점 이상, 1·2차 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결정

4. 검토의견

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7개소 및 신규위탁1개소, 재위탁4개소를 추진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.

재계약 대상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등 관련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며,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붙임2 관련 법령

○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② **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**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○「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」 제23조(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)

① **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·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**
② 수탁자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③ 법인과 단체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④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, 수탁자선정 공고 시에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.
⑤ 시립어린이집의 **위탁기간은 5년**으로 하고, **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** 다만, 위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, 보육의 질 향상과 운영실태 및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○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1. **위탁기간의 변경**
2.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
3.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※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법령

○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9조의2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)

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**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**으로 한다.